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23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임미애·박해철·민형배

김 윤ㆍ이병진ㆍ권향엽

안호영 • 박희승 • 윤준병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 1회 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 전·당기 재무제표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회계감사 기능이 상실되는 등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역농협은 지역 내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을 비롯한 농민, 서민 등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금융기관과 같이 고도의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므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최근 5년간 지역농협에서는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특별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 로써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법률 제 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1항 중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을 "직전"으로,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 여"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지역농협의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감사인 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 계 감사) ① 조합장의 임기 개 계 감사) ① 직전-----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 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 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 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 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속 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지역농협의 경우 그 다음 연속 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 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감사인 지정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

	<u>다.</u>
<u>②</u> · <u>③</u> (생 략)	$\underline{3} \cdot \underline{4}$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